

예 산 총 칙

제 1 조 2015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 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총 계	4,558,880,000	136,766,400
일 반 회 계	4,034,000,000	121,020,000
특 별 회 계	524,880,000	15,746,400
공기업특별회계(지역개발기금)	270,273,000	8,108,190
기 타 특 별 회 계	254,607,000	7,638,210
· 강 원 도 립 대 학 운 영	9,631,000	288,930
· 의 료 급 여 기 금 운 영	226,340,000	6,790,200
· 학 교 용 지 부 담 금	18,636,000	559,080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 예산" 과 같다.

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"채무부담행위조서"와 같다.

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"계속비사업조서"와 같다.

제 5 조 (명시이월사업) : "해당없음"

제 6 조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는 40,339,627천원으로 하고
재해·재난목적예비비는 5,0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41,700,000천원으로 한다.
(한도내 41,700,000천원, 한도초과 100,000,000천원)

제 8 조 다음 경비에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
규정에 의하여 아래 비목 상호간 또는 타 비목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다.

- (1) 공무원 기준인건비
- (2) 차입금 원리금상환
- (3) 공공요금, 제세공과금, 배상금, 법정전출금
- (4) 재해대책 및 복구비